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2. 12. 04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11.2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2.11.22.
- 다. 상정일자 :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2012.12.0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강 창 수 주택과장

가. 제안이유

대다수가 극빈층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내용

- 1)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제2호)
- 2)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한 심의 생략(안 제10조제1항제2호)

- 3)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율 규정(안 제10조제3항 별표 1)
-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제외 규정
(안 제10조제3항 별표 1)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2005.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당시에 마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0 최근 성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살까지 선택하는 불행한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도등·통행로등 및 옥외 보안등을 점등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자살 등 불행한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조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공동 전기료 부담이 어려워 조도개선을 반대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절박한 경제적인 사정을 알게 되었고, 지난 10월 8일에 마포경찰서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등 생명존중 인식개선과 자살방지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음.

0 마포구의회에서도 제172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매우 궁핍한 생활때문에 공동주택 전기료가 부담이 되고 있

으로 자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 전기료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구한 바 있음.

- 0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0년 10월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을 공문으로 시달하여 자치구별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여, 현재 서울시 25 개 자치구중 8개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음.
- 0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고, 우리 구보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타구에서도 이미 공동 전기료 시행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존귀한 것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되는 불미스런 사건 발생 예방과 자살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나,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지원하도록 한 공동 수도료에 대한 대책과 일부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등 주민들의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